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및 할당관세 · 조정관세 일부개정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및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조정관세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관세법 제241조 제4항에 따라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 II.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돼지고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삼겹살	0203.19-1000	2022.06.22.~2022.12.31.
	기타	0203.19-9000	2022.06.22.~2022.12.31.
돼지고기 (냉동한 것)	삼겹살	0203.29-1000	2022.06.22.~2022.12.31.
	기타	0203.29-9000	2022.06.22.~2022.12.31.
계란	건조한 계란 (노른자위)	0408.11-0000	2022.06.22.~2022.12.31.
	기타 계란 (노른자위)	0408.19-0000	2022.06.22.~2022.12.31.
	기타 건조한 계란	0408.91-0000	2022.06.22.~2022.12.31.
	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0408.99-1000	2022.06.22.~2022.12.31.
알부민	건조한 것 (알의 흰자위), 식품 원료용의 것	3502.11-0000	2022.06.22.~2022.12.31.
	기타 (알의 흰자위),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냉동 상태의 것	3502.19-0000	2022.06.22.~ 2022.12.31.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밀과 메슬린	기타 제분용	1001.99-2090	2022.06.22.~2022.12.31.
	기타	1001.99-9090	2022.06.22.~2022.12.31.
밀가루나 메슬린 가루	밀가루	1101.00-1000	2022.06.22.~2022.12.31.
대두유와 그 분획물	식품용 조유	1507.10-1000	2022.06.22.~2022.12.31.
	기타 식품용 정제유	1507.90-1010	2022.06.22.~2022.12.31.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조유 해바라기씨유	1512.11-1000	2022.06.22.~2022.12.31.
	정제유 해바라기씨유	1512.19-1010	2022.06.22.~2022.12.31.
요소 (수용액 포함)	기타 요소	3102.10-9000	2022.01.01.~2022.12.31.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요소수	3105.10-0000	2022.06.22.~2022.12.31.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3105.30-0000	2022.06.22.~2022.12.31.
조제 점결제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3824.99-9052	2022.06.22.~2022.12.31.
페로크로뮴	기타 페로크로뮴	7202.49-0000	2022.06.22.~2022.12.31.
망간과 그 제품	철강제조용 망간과 그 제품	8111.00-0000	2022.06.22.~2022.12.31.

### III. 할당관세·조정관세 일부개정 (시행: 2022.06.22.)

#### 1. 할당관세 일부 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1) 할당관세란?

-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화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2) 돼지고기, 밀,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농작물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퍼센트로 인하하고, **사료용 뿌리채소류** 등의 할당관세 적용 한계수량을 700,000톤에서 1,000,000톤으로 확대하며, 식품원료인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이차전지 및 철강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첨가제** 및 **철강 제조용 망간**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 2. 조정관세 일부 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1) 조정관세란?

- “조정관세”란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2) 나프타 조정관세 삭제

- 최근 원유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상 0.5퍼센트의 조정관세를 적용받는 나프타 등에 대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69호)

[붙임2] 할당관세 · 조정관세 부과대상

## | Contact



홍재현 관세사

T 070-4353-1547  
E jhhong@esein.co.kr



허윤희 관세사

T 070-4353-1593  
E yhheo1@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